

KERI Brief

청년세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현 재 발의된 ‘청년세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서 1조 원을 차감 후 1%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실상 기업에 대한 세율을 1%p 인상하는 증세정책이고, 그 재원으로 공공일자리를 추진한다면 이 또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서 경제성장을 꾀해야 하는 지금,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인세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과 세부담은 OECD 상위권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 저하, 기업 R&D 투자 감소, 사업확장기회 축소 등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은 잘못된 방향이고,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투자·상생협력세제 연장 등 지속적인 증세 기조로 세부담은 이미 급격하게 상승했으므로 더 이상의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2010년부터 3%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대로 진입하는 등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체계도 지난 수년간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증세는 고용위축 유발로 오히려 민간 청년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증세 법안은 신중해야 한다. 청년고용 측면에서도, 청년세법안의 재원이 사용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확대 지원, 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주로 사용되므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공공일자리정책이 주가 될 것이고 이는 근로 단절, 근로의욕 약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표적증세(청년세)는 지양하고, 현행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년일자리 정책방향이다. 기업 증세로 조성한 재원을 통한 공공청년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채용 인센티브와 청년고용세액공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를 대기업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I. 검토 배경

□ 급증하는 복지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가 아닌 설탕세,¹⁾ 청년세, 시멘트세²⁾ 등 특정집단을 겨냥한 특별세 신설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음

○ 이 중 청년세법안은 법인의 연간 소득에서 1%를 청년세로 부과하여 그 재원을 청년일자리아업 등에 쓴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기업에 대한 증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 2020년 기준 청년 취업자 수는 376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3천 명 감소했고, 체감 실업률(25.1%)도 전년 대비 2.2%p 증가했음

- 특히, 2020년부터 전체 실업률 3~5% 대에 비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10% 대로 2배 이상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그나마 고용이 개선된 지표를 보여준 4월 고용동향에서도 청년층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음³⁾

○ 그러나 보편적 증세가 아닌 기업에 대한 표적증세는 고용위축 유발로 오히려 청년일자리를 감소시킬 수도 있음

□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연장 등 기업에 대한 증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법인세 인상 후 국내설비투자율은 감소하고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반면,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여 법인세율 증가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음

- 2018년 법인세율 인상으로 2018년 법인세수(70.9조 원)는 전년 대비 11.7조 원(19.9%) 늘어나 매우 큰 증가폭을 보여줬음

○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강화로 기업에 대한 세부담(내국세 중 법인세수 27.8%, 2019년 기준)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므로 더 이상의 증세는 타당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가운데 세금 부담을 더 가중시키기 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청년세법안 내용과 현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을 검토하고, 기업증세 및 세부담 현황을 분석하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 함

1) 설탕세: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에 대해 100L당 1,000 ~ 28,000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민건강 증진부담금임(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 시멘트세: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 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목적) 대상에 시멘트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방안으로 시멘트 1톤당 1,000원씩 지방세를 부과하여 피해지역에 분배함(이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3)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II. 청년세법안 및 청년일자리정책의 주요 내용

1. 청년세법안⁴⁾

□ [입법 취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일자리 마련 등 청년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입법안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1%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음(2020년 8월 통계청 발표)

- 현재와 같은 청년이 적정한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고 함

□ [주요 내용] 법인의 연간 소득에 법인세와 별도로 1% 세율을 부과하여 청년일자리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 법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함

○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청년세법안 제1조)

○ 내국법인⁵⁾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하고(청년세법안 제3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각각 1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함(청년세법안 제4조 및 제5조)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청년세법안 제7조)

○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으로 함(청년세법안 부칙 제2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안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⁶⁾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차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함

2.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⁷⁾

□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청년층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고, 2021년에도 청년 고용여건의 개선은 더딜 것으로 전망

* 20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4)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청년세법안(의안번호: 8287), 2021.2.2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5)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청년세를 부과하지 않음

6)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80), 2021.2.2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7)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2021.3.3

○ 20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376.3만 명(전년대비 △ 18.3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년동월 대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체감실업률⁸⁾은 25.1%로 전년 대비 2.2%p나 크게 증가**했음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20.3월)△ 22.9, ('20.6월)△17.0, ('20.9월)△21.8, ('20.12월) △30.1, ('21.1월)△31.4

** 체감실업자 규모(만 명): ('16) 108, ('17) 112, ('18) 113, ('19) 115, ('20) 121, ('21.1) 130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이 확대(5만 명) 되고, 비경제활동사유 중 '쉬었음'이 증가(8.8만 명)하는 추세*임

* 청년층 쉬었음(천 명, 전년비): '18년 313(+14), '19년 360(+47), '20년 448(+88), '21.1월 495(+112)

-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미래 핵심 근로계층의 부양 부담의 가중을 우려하게 만들 것임

○ 청년 신규채용감소,⁹⁾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침체¹⁰⁾ 등이 가장 큰 피해요인으로 작용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빠른 고용 개선은 어려울 것임

- 최근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애물이 되고 있고, 대면서비스업 침체에 따른 임시·일용직 급감으로 취업준비·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의 소득창출기회가 감소되고 있음

- 최근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했는데,¹¹⁾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한 10.0%로 전체 실업률보다 2.5배 높은 상황임

• 실업률은 20대·30대가 상승, 40대·50대·60세 이상이 하락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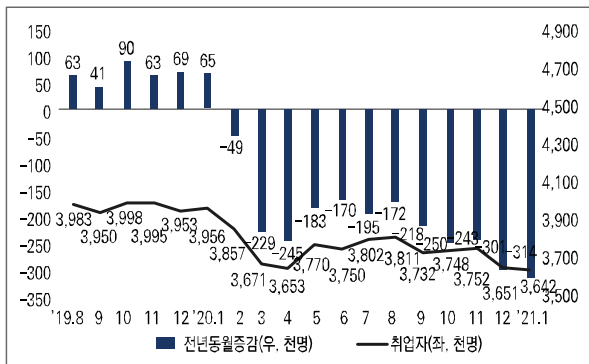
8)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보고 계산한 것임. 공식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았지만 한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청년 공식 실업률은 9%로 전년 대비 0.1%p 소폭 증가했음

9) 기업규모별 신입 채용확정 비율(%), '20→'21, 인크루트 대상 사 대상 설문조사):
(대기업) 71.7 → 56.2, (중견기업) 46.8 → 43.4, (중소기업) 30.8 → 32.7

10)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 비중('20년): ▲ 숙박·음식점: 14.9%, ▲ 제조업: 14.6%, ▲ 도·소매업: 14.2%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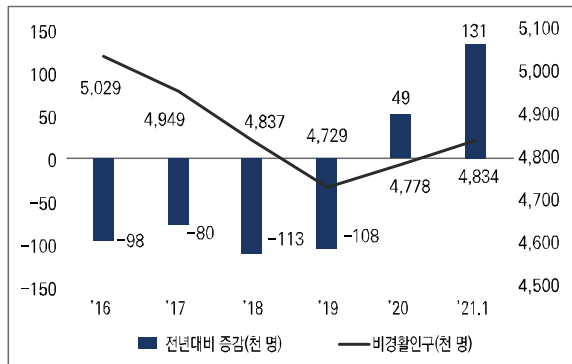
11) 실업자 수는 114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 명 (-2.1%) 감소했음

〈그림 1〉 청년층 취업자 증감 추이('19.8~'21.1)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2021.3.3

〈그림 2〉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16~'21.1)



〈표 1〉 실업률 추이

구 분	'20. 4월	'21. 1월	2월	3월	4월
실업률(%)	4.2	5.7	4.9	4.3	4.0
15~29세(청년층) 실업률(%)	(9.3)	(9.5)	(10.1)	(10.0)	(10.0)

자료: 통계청, '2021년 4월 고용동향', 2021.5.12

□ 청년고용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올해 3월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년일자리확대 지원, 직업훈련 강화, 맞춤형 고용지원 등임

○ 2021년 총 5.9조 원을 투입하여, 104만 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부록 참고)

-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11만 명으로 확대하고(+6만 명),¹²⁾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청년에 우선 지원하며,¹³⁾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6만 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0.5조 원)을 지원함¹⁴⁾
-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 기업 발굴 및 지원 대폭 확대,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글로벌기업과 협업하여 해외시장 진입 지원 등 방안 추진

○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고,¹⁵⁾ 청년 직접일자리를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일자리 등에서 창출하며(2.8만 명),¹⁶⁾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를 신속하게 채용하겠다고 함(2.2만 명)

- 12)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 원, 최대 6개월)
- 13) 디지털일자리 사업과 달리 비IT 직무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며,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00만 원, 최대 6개월)
- 14)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6만 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0.5조 원, 금리 1.55%)을 지원하고, 대출 이후 1년간 기존 청년 고용 유지시 금리 우대(1.15%)
- 15)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21년→'23년) 추진(「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내 개정)
- 16) 온라인 튜터(0.4만 명),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DB 구축(200명), 학교 방역인력 지원(1만 명) 등

III.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 검토

▣ **현 정부는 법인세율 3% 인상¹⁷⁾과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연장 등으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증세 정책을 시행해 왔음**

○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반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말 세법개정으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음

- 2017년 말 법인세율 3%p인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되어 2020년 기준 OECD 평균(21.1%)보다 높아졌고 OECD 36개 국가 중 5번째로 세율이 높게 되었음(중앙정부)¹⁸⁾¹⁹⁾

-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2단계를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3단계로 확대되었고, 2018년부터는 최고세율 인상과 구간 신설(3천억 원 초과)로 4단계가 되었음

•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고, 3단계 이상 세율구조를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와 벨기에 밖에 없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음²⁰⁾

○ 또한, 정부는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18년부터 3년간 운영하다가, 2020년 말 그 적용기간을 2년 연장했음

- 2015년부터 적용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몰된 후, 바로 2018년 내용과 목적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게 재설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3년간 적용하였고, 2020년 세법개정에서 적용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했음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경제적 비효율 야기, 이중과세, 사적자치 제한 등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선순환 구조 유도라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세수만 증대시키는 등 세부담만 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²¹⁾

- 17)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25%
- 18)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호주(30%), 프랑스(28%), 멕시코(30%), 뉴질랜드(28%)가 있음
- 19)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는 9위 수준임(27.5%). 호주(30%), 프랑스(32.02%), 독일(29.9%), 이탈리아(27.81%), 일본(29.74%), 멕시코(30%), 뉴질랜드(28%), 포르투갈(31.5%)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임
- 20)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현황(OECD).

구간	해당 국가
1단계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독일, 이스라엘,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단일 세율)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라트비아, 미국, 터키, 영국, 캐나다 (총 29개국)
2단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리투아니아 (총 5개국)
4단계	벨기에, 한국 (총 2개국)

자료: OECD Tax Database

21) 임동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0.10

〈표 2〉 법인세율 개정 연혁

과표구간	'96년	'97~'02년	'03~'05년	'06~'08년	'09년	'10년	'11~'12년	'13~'17년	'18년~
~1억 원	18%	16%	15%	13%	11%	11%	10%	10%	10%
1~2억 원	30%	28%	27%	25%					
2~200억 원					25%	22%	22%	20%	20%
200~3천억 원								22%	22%
3천억 원~					25%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년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없이 기업증세정책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기업환경 개선은 어려워 보임

-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범위를 기존 Positive 방식(열거된 특정시설)에서 Negative 방식(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개선방향임
- 그러나, 대상 투자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낮춘 것은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 대기업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1%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생산성향상설비투자공제율 1%와 변화가 없고, 이전 환경보전시설(3%), 5세대 네트워크 시설(3%) 등보다 오히려 공제율이 낮아졌음

□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기업(103개, 0.03%)이 법인세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

○ 2019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15.7%)은 OECD 평균보다 7.5%p 크고, OECD 회원국 중 2위로 높은 수준임²²⁾

-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계속적으로 OECD 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2018년 15.7%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해서 15%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4.3%)은 OECD 평균보다 1.5%p 높으며,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함(2019년 기준)

-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7%), 칠레(4.8%) 등이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은 국가임²³⁾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3%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대로 진입하는 등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22) 2018년 기준 높은 수준이었던 멕시코(21.3%)와 호주(19.1%)는 2019년 자료가 없음

23) 호주의 경우 2018년 기준 5.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2019년 자료가 없음

〈표 3〉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의 추이

(단위: %)

구분	2019	2015	2010	비고
한국	15.7	13.1	13.8	3위 (2019년)
미국	3.9	8.1	7.5	
일본	-	12.3	11.6	
프랑스	4.9	4.6	5.5	29위 (2019년)
영국	7.6	8.8	8.9	
OECD 평균	8.2	9.2	8.9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표 4〉 GDP 대비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 (OECD, 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부담수준	4.3	1.0	4.2	2.2	2.5	2.8
순위	4위	32위	5위	21위	19위	-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법인세의 세부담 집중도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이 법인세 총세수 대비 74.8%(50조 2,515억 원),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50.7%(34조 1,088억 원)을 부담하고 있음(2019년 기준)

- 0.3%의 기업²⁴⁾이 74.8%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0.03%(103개)의 기업이 50.7%의 세부담을 지고 있어 조세편중현상이 심각함

- 한편, 총 내국세 측면에서 보면 200억 원 초과 기업은 19.4%,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13.2% 부담하고 있음(2019년 기준)

□ 현재 발의된 '청년세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차감 후 1%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실상 기업에 대한 세율을 1%p 인상하는 증세정책²⁵⁾이고, 그 재원으로 공공일자리를 추진한다면 이 또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 일반적으로 청년세 같은 목적세는 해당 목적과 세율이 논리정연하게 연결되지 못하며, 한번 제정되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폐지하기 어려워 계속 연장되는 등 세출 낭비 요소가 있음

○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서 경제성장을 꾀해야 하는 지금,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인세의 인상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과 세부담은 OECD 상위권임

- OECD 국가 중 5번째(지방세 포함 9번째)로 높은 법인세율과 4번째로 높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4.3%)을 볼 때, 과중된 세부담이 기업에 집중된 현 상황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되지 않을 것임

-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 저하, 기업 R&D 투자 감소, 사업확장기회 축소 등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은 잘못된 방향임

○ 또한, 현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투자·상생협력세제 연장 등 지속적인 과세 강화로 세부담은 이미 급격하게 상승했으므로 더 이상의 표적증세는 타당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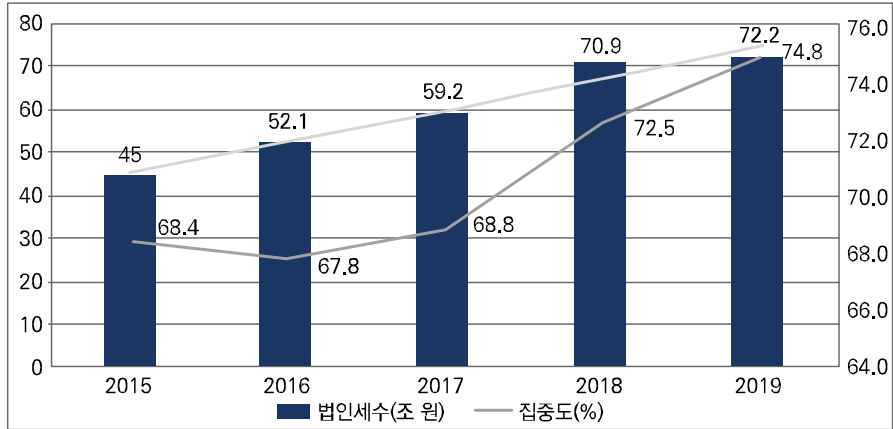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법인세수의 증가 추세보다 과세표준 200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부담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2018년부터 70%대로 급격하게 상승했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도 2019년 급격하게 4.2%p 증가하여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음(최근 5년간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5년 15.9%, 2016년 17.1%, 2017년 18.0%, 2018년 18.4%, 2019년 22.6%)

24) 1,412개. 법인세 납부기업은 총 403,631개임(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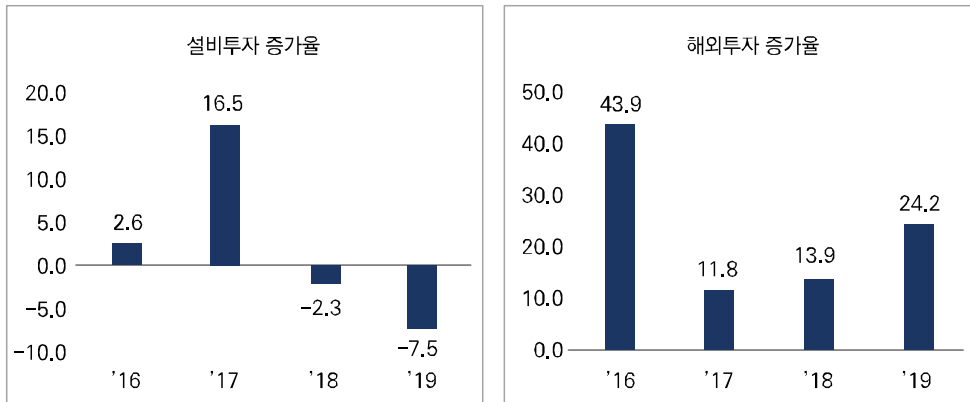
25) 2019년 기준 약 3.5조 원의 증세 효과임

〈그림 3〉 법인세수 및 세부담 집중도 추이



자료: 국세통계연보, 저자 정리

〈그림 4〉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전후 설비투자 및 해외투자 증가율 비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2020.11.3

-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체계는 지난 수년간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을 것임

○ 특히, 기업에 대한 증세는 고용위축 유발로 오히려 민간 청년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세금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신규채용 감소, 임금상승률 둔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증세 법안은 신중해야 함

- 실제로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법인세율 증가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미국의 경우를 볼 때, 2017년 법인세를 인하했던 세제개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도 50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렸으며 중산층의 임금상승을 견인하는 등 법인세 인하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했음²⁶⁾

○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3.3% 인상으로 총 국내투자가 20조 9천억 원 감소하고, GDP도 연평균 1.12%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²⁷⁾에서 보듯이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투자환경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후 설비투자가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가운데,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므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²⁸⁾

○ 청년고용 측면에서, 청년세법안의 재원이 사용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고용확대 지원, 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주로 사용되므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공공일자리정책이 주가 될 것이고 이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임

- 올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도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책이 주요 내용이었으므로,²⁹⁾ 청년세 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공공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

- 공공일자리정책은 단기 일자리의 성격이 강하여 지속성이 길지 않아 또 다시 근로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공공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어 주체적인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었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³⁰⁾

▣ [정책방향] 과중한 세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표적증세(청년세)는 지양하고, 현행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년일자리 정책방향임

- 기업 증세로 조성한 재원을 통한 공공청년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않는 정책일 것임
-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채용 인센티브와 청년고용세액공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를 대기업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것임

-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지원과 중소기업에 한정된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³¹⁾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야 함

26) 또한 주요 대기업은 2018~2019년 R&D 투자를 이전 2년에 비해 25% 확대했음(Business Roundtable, "Business Roundtable Survey Finds Corporate Tax Increases Would Weaken U.S. Business Expansion, Hiring, Investments in R&D and Innovation", 2021.4.12)

27) 조경엽,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9.12

28)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2020.11.3

29)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고, 청년 직접일자리를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일자리 등에서 창출하며(2.8만 명, 온라인 튜터(0.4만 명),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DB 구축(200명), 학교 방역인력 지원(1만 명) 등),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를 신속하게 채용하겠다고 함(2.2만 명)

30) 유진성·임동원,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20.11

31) 청년고용 R&D 3종 패키지

- (의무채용) R&D 정부지원금 4~5억 원당 과제 관련 청년 1명 채용 의무화
- (현금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과제 관련 청년 신규 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민간매칭자금(현금)으로 인정
-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이 사업화 단계에서 청년 신규 채용시,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 감면

청년세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상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중 기술료 감면 부분도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되고 있음 <p>- 조세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줄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상 고용증대세제는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이지만, 대기업은 공제한도도 작고 적용기한도 중소·중견기업(3년)보다 1년 짧아 실효성이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³²⁾ <p>32)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는 청년 정규직, 고용 규제 완화 해야”, 2021.4.13</p>
---	---

〈표 5〉 고용증대세제 개요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우대대상 상시근로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1,1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기타 상시근로자	700만 원	770만 원	450만 원	-

주: 대기업은 2년(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중소·중견기업은 3년

IV. 요약 및 결론

▣ 현재 발의된 '청년세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차감 후 1%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실상 기업에 대한 세율을 1%p 인상하는 증세정책³³⁾이고, 그 재원으로 공공일자리를 추진한다면 이 또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 일반적으로 청년세 같은 목적세는 해당 목적과 세원이 논리정연하게 연결되지 못하며, 한번 제정되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폐지하기 어려워 계속 연장되는 등 세출 낭비 요소가 있음
-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서 경제성장을 꾀해야 하는 지금,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인세의 인상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과 세부담은 OECD 상위권임
 -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고,³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기업(103개, 0.03%)이 법인세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
 -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 저하, 기업 R&D 투자 감소, 사업확장기회 축소 등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은 잘못된 방향임
- 또한,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투자·상생협력세제 연장 등 지속적인 증세 기조로 세부담은 이미 급격하게 상승했으므로 더 이상의 표적증세는 타당하지 않음
 -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2010년부터 3%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대로 진입하는 등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체계도 지난 수년간 급격히 악화되었고,³⁵⁾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을 것임

○ 특히, 기업에 대한 증세는 고용위축 유발로 오히려 민간 청년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세금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신규채용 감소, 임금상승률 둔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증세 법안은 신중해야 함
- 실제로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설비투자 증가율은 줄고, 해외투자 증가율은 늘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감소시켰음

○ 청년고용 측면에서도, 청년세법안의 재원이 사용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확대 지원, 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주로 사용되므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공공일자리정책이 추가 될 것이고 이는 근로 단절, 근로의욕 약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임

▣ 과중한 세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표적증세(청년세)는 지양하고, 현행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임

33) 2019년 기준 약 3.5조 원의 증세 효과임

34) 2019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15.7%)은 OECD 평균보다 7.5%p 크고, OECD 회원국 중 2위로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4.3%)도 OECD 평균보다 1.5%p 높으며,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함(2019년 기준)

35) 법인세수의 증가 추세보다 과세표준 200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부담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2018년부터 70%대로 급격하게 상승했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기업 증세로 조성한 재원을 통한 공공청년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않는 정책일 것임
-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채용 인센티브와 청년고용 세액공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를 대기업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것임
- 근본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2021.3.3
- 유진성·임동원,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20.11
- 임동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0.10
- 조경엽,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9.12
- 통계청, “2021년 4월 고용동향”, 2021.5.12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2020.11.3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는 청년 정규직, 고용 규제 완화 해야”, 2021.4.13
- Business Roundtable, “Business Roundtable Survey Finds Corporate Tax Increases Would Weaken U.S. Business Expansion, Hiring, Investments in R&D and Innovation”, 2021.4.12
- 국세통계연보(2016~2020)
-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부 록]

〈청년고용활성화대책 추진과제〉

사업		'21년 지원 규모	
청년 구직자 지원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2월)		55.5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23만)	청년내일채움공제(10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	청년디지털일자리(5만)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3.7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6만)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2.2만)	
공무원 총원 + 공공기관 신규 채용		2.9만 명 + 2.6만 명(+@)	
K-Digital Training		1.7만 명	
K-Digital Credit		4만 명	
내일배움카드(실업자, 34세 이하)		9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2.9만 명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패키지		0.7만 명	
비대면 분야 창업 지원		900명	
청년 스타트업 서비스 바우처지원		1.6만 개소	
추가 사업		'21년 지원 규모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 명(+5,611억 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설		+2만 명(+1,200억 원)	
K-Digital Training		+0.3만 명(+474억 원)	
K-Digital Credit		+4만 명(+200억 원)	
청년 도전지원사업		+0.5만 명(+65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5만 명(+1,078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1만 명(+603억 원)	
비대면 분야 창업 지원		+0.4만 명(+900억 원)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전문인력 등		+1.8만 명(+2,060억 원)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 지원		+2.8만 명(+2,142억 원)	
고졸 청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0.8만 명(+200억 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2021.3.3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12월 27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